
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장비 대여 및 관리 지침

제1조 [목적] 본 규정은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서 제공하는 장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범위] 지원하는 장비는 대회 출품작 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.

제3조 [대여신청] 물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(붙임 1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 [대여기간] 물품의 대여시간과 기간은 2021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운영사무국(이하 “운영사무국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, 운영사무국과 사전합의 시 대여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 [대여료] 물품대여는 따로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으나 파손, 분실, 훼손 시 해당 물품 현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 [대여의 취소] 물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되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물품을 대여받은 자가 이를 대여 목적 외에 사용할 때
2.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
제7조 [물품의 반환명령]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물품 반납을 명할 수 있다.

1. 사용자의 대회 참가 포기, 탈락 등 더이상 물품을 이용한 대회 참여가 어려울 때
2. 제6조(대여의 취소)에 해당된 때
3. 기타 사용자에게 대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
제8조 [사용자의 관리와 책임] 사용자가 물품을 사용하는 동안 관련하여 물품의 파손, 훼손, 분실, 구조변경 등 물품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또한,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제9조 [보고] 대여를 득한 단체나 개인은 변동사항 발생 시 운영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, 변동사항을 운영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 [반납] 물품대여를 한 단체나 개인은 사용 반납 시 운영사무국 담당자와 대여물품 상태를 확인 후 반납을 하여야 한다.